

보도자료

2011년 12월 27일(화) 배포시점 부터 보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문의 : 기획조정실 비상계획담당관 안성훈(☎750-1810)
비상계획담당관실 최종성 사무관(☎750-1811) jschoi@kcc.go.kr**방통위, 정부기관중 가장 우수한 재난·위기관리 능력 보유****-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대통령표창 수상 -**

방송통신위원회(위원장 최시중)는 행정안전부가 주관한 2011년도 국가기반체계 재난관리 평가 결과, 91개* 관리기관 중 최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대통령 표창을 수상했다

* 91개 기관 : 정부부처 14, 특별행정기관 11, 공공기관·단체 33, 지자체 23, 민간 10

각종 재해와 재난이 빈번해짐에 따라 국민의 생활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는 에너지, 정보통신, 교통수송 등 국가기반체계에 대한 재난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되고 있는 가운데 실시된 올해 평가에서,

지난 연평도 포격사건 및 수도권 집중호우 발생 시에 신속한 대응으로 주요통신시설을 정상적으로 운영하여 피해확산을 막은 점과 각종 통신 재난에 대비하여 충실한 계획 수립·점검 및 훈련실시로 위기발생시 적극 대응한 부분에 높은 점수를 받았다

방송통신위원회는 위기대응 및 효율적인 재난관리를 위해 전국 160여개 방송사와 ‘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’을 구축하여 국민들에게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재난정보를 제공하여 사전에 재난으로부터의 피해를 예방하고 있다.

또한, 방통위는 이번 수상과 더불어 '2011 을지연습 정부기관평가' 에서도 대통령 단체표창을 수상하는 등 정부기관 가운데 가장 우수한 재난 및 위기관리 능력을 보유한 기관으로 자리매김을 하였다

방송통신위원회 기획조정실 안성훈 비상계획담당관은 앞으로도 한발 앞선 재난대응체계를 구축하여 안전한 방송통신서비스 환경을 유지하는데 더욱 매진하겠다고 말했다.

붙임 : 재난방송 업무현황(재난방송 온라인시스템) 설명자료 1부. 끝

<붙임>

재난방송 업무 현황

□ 개 요

- 『자연재해대책법』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『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』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, 그 발생을 예방하거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송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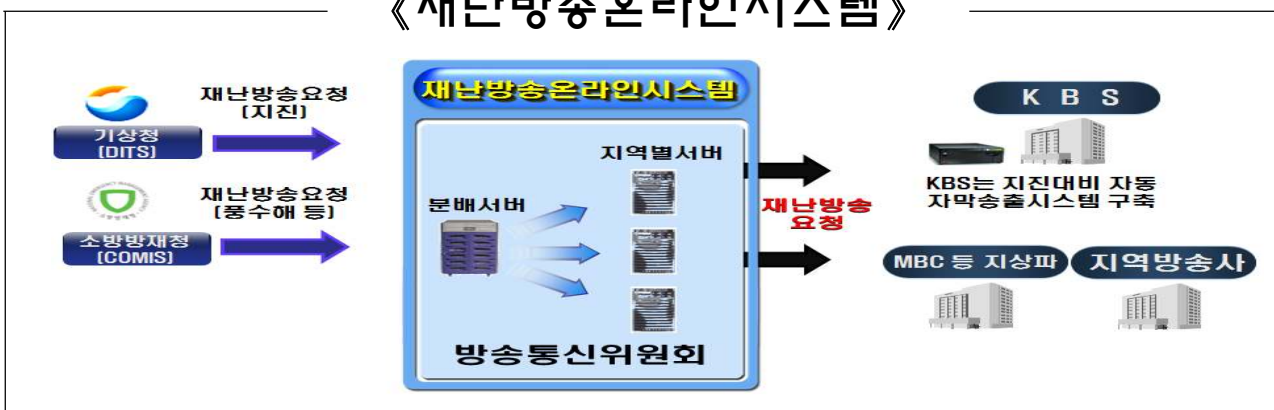
※ 근거법령 : 방송통신발전기본법 제40조

- 지상파방송사 등 62개 사업자는 의무적으로 재난방송을 실시하고 기타 사업자는 위원장 요청시 재난방송 실시

□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 구축·운용

- 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(Emergency Disaster Broadcasting System)은 재난상황을 전국 방송사에 실시간 자동 통보하는 시스템으로 '06.7월부터 구축·운용 중

《재난방송온라인시스템》



※ KBS는 지진 등 긴급재난에 대비하여 재난방송 요청시 방송사에서 자막 작업을 거치지 않고 확인 버튼만 누르면 바로 TV로 송출될 수 있는 자동 자막송출시스템 구축 운영 (2010년부터 시범 운영 중)

○ 재난방송 요청 경로

- 지진 : 기상청 → 방통위 → 방송사 (내륙 3.5, 해역 4.0 이상)
- 풍수해 등 기타 재난 : 소방방재청 → 방통위 → 방송사

※ 기관간 재난방송 요청은 실시간 자동 요청을 위해 시스템으로 구성